

제2661호
2019. 5. 31.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규 칙

- 제709호 :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 조례시행규칙」등 일괄개정규칙 2
- 제710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4

● 기 타

- 더 유니스타(주) 고시 제2019-1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1, 2구역 재개발사업 이전고시 5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규 칙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09호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등 일괄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 조례시행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포괄적 정비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원활할 제도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장애인 이라 함은 중구 사회복지과에 등록된 장애인(1급~6급)”을 “장애인이라 함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2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규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이용자의 자격)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1.~3.(생략)</p> <p>4.장애인 이라 함은 중구 사회복지과에 등록된 장애인(1급~6급)을 말한다</p> <p>5.(생략)</p>	<p>「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이용자의 자격) ----- ----- ----- ----- 1.~3.(현행과 같음)</p> <p>4. 장애인이라 함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p> <p>5.(현행과 같음)</p>
<p>「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과태료 감경)</p> <p>「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은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p>	<p>「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과태료 감경) ----- ----- -----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 ----- -----</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2019.7.1.일자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 등급(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1~6급)이 명시된 우리 구 규칙을 일괄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장애 1~6등급 (개정) 등록장애인
 - (현행) 장애 1~3등급 (개정) 심한장애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10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상위 자치법규인「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전면 개정 (2010.12.29.)시「동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였던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지원계획, 적용범위, 지원대상, 지원신청, 사업시행, 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현「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은 사실상 존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시행규칙」폐지
(제정일 : 2006. 6.15 규칙 제457호)

기 타

◎더 유니스타(주) 고시 제2019 - 1 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1,2구역 재개발사업 이전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호(2009.03.19.)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0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86호(2019.03.0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89호(2014.11.13.)로 세운6-3-1구역과 6-3-2구역 통합 변경 결정 되어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5-27호(2015.04.21.)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9-40호(2019.04.17.)로 공사완료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9-54호(2019.05.22.)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중구 을지로4가 261-4번지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1,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6조에 제1항 규정에 의거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같은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더유니스타 주식회사(☎02-2222-500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5월 31일
사업시행자 더유니스타(주)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재개발사업
- 명 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1,2구역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지적확정측량 결과에 의함)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23번지 일원
- 면 적 : 14,711.00㎡(대지 10,032.00㎡, 정비기반시설 4,679.0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더유니스타 주식회사
- 주 소 : 서울시 중구 수표로 30, 315호(저동2가)

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5.09.11.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2019.05.22.)

마. 공사완료 고시일 : 2019.04.17.(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40호)

바. 이전고시 내역

○ 사업시행면적(m²)

종전			확정		
대지면적		10,032.0	대지면적		10,032.0
정비기반 시설면적	도 로	4,130.5	정비기반 시설면적	도 로	4,134.2
	공 원	544.8		공 원	544.8
	소 계	4,675.3		소 계	4,679.0
계		14,707.3	계		14,711.0

○ 건축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용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 높이(층수) : 높이 89.7m(지상20층/지하8층)
- 건축연면적 : 146,675.88m²

※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별 세부내역(이전고시 대상면적) : 별첨

○ 토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 : 더유니스타 주식회사

- 토지

구 분		지번	지목	면적(m ²)	비고		
대지 면적	대지	을지로4가 323	대	9,933.60	구분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 서울시 중구청) 구분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 서울교통공사) 구분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 서울교통공사)		
	입체적도시 계획시설(도로)			162.99			
	입체적도시 계획시설(철도)			69.7			
	입체적도시 계획시설(철도)			728.5			
	대지			예관동 138		대	90.40
	대지			인현동2가 239-1		대	8.00
	소 계			10,032.00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을지로4가 323-1	도로	1,419.60	무상귀속		
	(중로3-3)	인현동2가 239-5	도로	1,679.00			
		인현동2가 239-7	도로	46.10			
		을지로4가 323-2	도로	788.20			
	도로	예관동 138-1	도로	110.00			
		인현동2가 239-2	도로	20.30			
		인현동2가 239-3	도로	1.60			
		인현동2가 239-4	도로	69.40			
경관녹지	인현동2가 239-6	공원	544.80				
소 계			4,679.00				
합계(사업시행면적)				14,711.00	사업시행 완료면적		

- 건축시설

구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m ²)	비고
계	146,675.88	
토지등소유자	21,789.98	
체비지	124,885.90	
보류시설	-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건수 : 구분지상권 3건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구분					비고
			면적(m ²)	길이(m)	폭(m)	높이(m)	최초결정일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삼풍상가 데크(계획) 연결통로 및 엘리베이터, 계단	을지로4가 323	162.99	33.90	3.00 ~ 6.15	25.50 ~ 38.35	서울시 고시 제2017-394호 (17.11.9)	
세부사항	○ 입체적 결정범위(삼풍상가 데크(계획) 연결통로 및 엘리베이터, 계단) - 지상부(1F) A=110.61m ² , H=25.50 ~ 30.40m - 지상부(2F) A=45.97m ² , H=30.40 ~ 33.55m - 지상부(3F) A=6.41m ² , H=33.55 ~ 38.35m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구분					비고
			면적(m ²)	길이(m)	폭(m)	높이(m, 지하)	최초결정일	
철도	도시철도 (5호선) 을지로4가역	을지로4가 323	69.7	8.6	10.0	14.6~31.0	건설부고시 제151호 (91.3.25)	
세부사항	○ 입체적 결정범위(배오개길 서측 환기구 일부) - 지상부 A=19.3m ² , H=24.5 ~ 31.0m - 지하부 A=69.7m ² (지상중복 19.3m ²), H=14.6 ~ 24.5m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구분					비고
			면적 (㎡)	길이 (m)	폭 (m)	높이 (m, 지하)	최초결정일	
철도	도시철도 (2호선) 을지로4가역	을지로4가 323	728.5	53.9	33.1	13.5~31.6	건설부고시 제232호 (77.12.1)	-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부 부분 H=13.6 ~ 29.0m
세부 사항	○ 입체적 결정범위 1. 을지로4가교차로 남서측 출입시설, 냉각탑 일부 - 지상부 A=292.6㎡, H=24.5 ~ 31.6m - 지하부 A=637.6㎡(지상중복 204.4㎡), H=13.5 ~ 24.5m 2. 을지로 남측 환기구 일부 - 지하부 A=2.7㎡, H=15.4 ~ 22.8m						- 엘리베이터 부분 H=13.7 ~ 29.5m - 연결부 부분 H=14.7 ~ 23.3 - 냉각탑 및 공조실 부분 H=17.6 ~ 31.6m	

아. 관련서류 열람장소 : 사업시행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02-2222-5000)